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.

부 산 광 역 시 장

2020년 3월 25일

부산광역시 훈령 제1505호

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 규정 일부개정훈령

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지방소방경”을 “소방경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“지방소방정”을 “소방정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지방소방령”을 “소방령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지방소방경”을 “소방경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라목 중 “지방소방위”를 “소방위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지방소방령”을 “소방령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지방소방령 · 지방소방경”을 “소방령·소방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지방소방위”를 “소방위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3호가목 중 “지방소방령·지방소방경”을 “소방령·소방경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지방소방위”를 “소방위”로 한다.

제8조제4항제1호 중 “지방소방정”을 각각 “소방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지방소방령·지방소방경”을 “소방령·소방경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지방소방위”를 “소방위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지방소방위”를 “소방위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지방소방위”를 “소방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방소방사”를 “소방사”로 한다.

제14조 본문 중 “지방소방령”을 “소방령”으로 한다.

별표 대상계급란 중 “지방소방경”을 “소방경”으로 하고, 같은 란 중 “지방소방위”를 “소방위”로 한다.

부칙

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◇ 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령의 제·개정으로, 부산광역시 소속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계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(“지방소방경” → “소방경” 등)